

의안번호	2213032
의 퇴 인	이개호의원
회 답 일	2025.11.11.
추 계 번호	25C5232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맨발걷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억 8,900만원, 2031년 4억 3,200만원 등 5년간 총 21억 6,600만원(연평균 4억 3,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489	407	415	423	432	2,166	433

주: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맨발걷기 관련 사업 수행(안 제9조·제14조·제15조),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안 제19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맨발걷기 국민운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및 개선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맨발걷기의 건강증진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5.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6. 맨발걷기 교육 및 홍보 활동 7.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의 수립·시행 등)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맨발걷기 국민운동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맨발걷기 교육 시행계획은 교육부장관과 협력하여 수립·시행함(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둠(제1항)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맨발걷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그 밖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됨(제3항) 1. 보건복지부의 맨발걷기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맨발걷기 관련 법인·단체 등의 임직원 및 맨발걷기 분야의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한의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 건축사 또는 기술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 대학이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3	안 제6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1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1.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 (맨발걷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계획이나 시·군·구계획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동절기용방한 맨발길을 포함하여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의 실내나 그 밖의 소관 체육시설의 실내 또는 공원 등에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체육시설 등의 설치·운영 목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여야 함(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맨발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 등 맨발걷기시설의 설치·운영·점검·보수 등을 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맨발걷기 국민운동 관련 법인·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5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활동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제2항) ○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맨발걷기 활동단체 간의 계약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은 맨발걷기 교육, 맨발걷기 건강 증진 체험, 맨발걷기와 관광의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함(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맨발걷기시설 설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설 등에서 그 환자·수급자·거주자 및 이용자 등의 건강을 위하여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1조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원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발걷기우수마을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우수마을로 지정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의 통장·이장 또는 그 지역 대표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맨발걷기우수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 (국제교류 및 협력)	○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기관 또는 관계 외국 학자들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3조 (맨발걷기 효과의 조사·연구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증명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거나 이를 의료기관·연구소·대학·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1항) 1. 국내외 공신력있는 문헌 및 자료의 조사, 설문조사, 치료경험담의 조사를 통한 질병 예방 및 치료의 효과 연구 2. 맨발걷기가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연구 3. 착용형 건강측정기(wearable healthcare device)에 의한 심박수·혈압·심전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지표 등의 조사 및 연구	재량규정

10	안 제13조 (맨발걷기 효과의 조사·연구 등)	4. 맨발걷기 정도가 혈구수치, 간기능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신장기능 수치, 혈당 수치, 혈뇨 수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지표 등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연구 5. 맨발걷기 정도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효과를 의료기관을 통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연구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제2항) ○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방법과 위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11	안 제14조 (맨발걷기 효과의 연구 결과 활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른 조사·연구에 따라 밝혀진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라 밝혀진 맨발걷기의 건강효과를 참고하여 맨발걷기 실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15조 (맨발걷기 교재 발행 및 공급)	○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의 올바른 방법, 맨발걷기시 안전상 유의사항, 맨발의 건강적 효과 등을 담은 맨발걷기 교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공급할 수 있음. 다만, 학생 대상의 맨발걷기 교재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운영함	의무규정
13	안 제16조 (맨발걷기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등)	○ 보건복지부장관은 바른 맨발걷기 실천을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맨발걷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맨발걷기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제2항) ○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3항)	재량규정

14	안 제17조 (맨발걷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15	안 제19조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	○ 맨발걷기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함(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의 날과 맨발걷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맨발걷기의 날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 등)	—	○ 제정안에 따른 시행계획은 전년도 지자체별 시행계획 평가·환류, 지침 개발 등 전문적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연구용역 발주없이 소속 공무원이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6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7조 (맨발걷기시설의 설치 및 운영)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맨발걷기시설은 지자체별 조례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 제정안에 따라 맨발길과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이하 “맨발길등”)의 설치가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맨발길등 설치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별 설치 규모와 장소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5	안 제8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6	안 제9조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7	안 제10조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맨발걷기시설 설치 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11조 (맨발걷기우수마을 지원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우수마을 또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므로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가정하기 어려움
9	안 제12조 (국제교류 및 협력)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0	안 제13조 (맨발걷기 효과의 조사·연구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질병관리청이 수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국민의 건강 행태와 관련한 광범위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음. 맨발걷기에 대한 신규 조사 설계 또는 기존 조사 활용 등의 여부를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11	안 제14조 (맨발걷기 효과의 연구 결과 활용)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2	안 제15조 (맨발걷기 교재 발행 및 공급)		
13	안 제16조 (맨발걷기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4	안 제17조 (맨발걷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5	안 제19조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시행 사업으로 추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 맨발걷기 관련 사업 수행(안 제9조·제14조·제15조),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안 제19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을 산출함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정안에 따라 맨발걷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추계 첫 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인 2022년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3~’27)」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준용

- 추계 결과, 추계 첫해인 2027년에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2]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90	-	-	-	-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라 맨발걷기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하며, 그 외의 운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
 - (위원 정수) 총 15인 중 제정안에 따른 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과 공무원 3인을 제외한 11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횟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¹⁾의 본회의 개최횟수를 준용하여 서면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수당)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준용하여 15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3,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1)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회의 외에 전문위원회(7개) 분과회의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음

2)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3]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	6.6	6.6	6.6	6.6	6.6	33	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안 제9조)·맨발걷기 효과의 연구 결과 활용(안 제14조)·맨발걷기 교재 발행 및 공급(안 제15조)

- 제정안에 따라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맨발걷기 효과 홍보, 맨발걷기 교재 발행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건복지부 유사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
 - － 보건복지부는 ‘비만예방관리 및 정책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비만 예방관리사업 운영지원(지침·프로그램 개발, 실적 관리, 담당자 교육 등), 비만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국가 비만예방관리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2억 8,700만원을 배정함
 -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가정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15억 5,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4] 맨발걷기 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안 제9조·안 제14조·안 제15조	298	304	310	317	323	1,552	3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안 제19조)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보건복지부의 ‘비만예방의 날’ 행사 진행비 8,900만원(2024년 기준)을 준용하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추계 결과, 추계기간 동안 4억 9,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5]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안 제19조)	94	96	98	100	102	491	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 총 21억 6,600만원(연평균 4억 3,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맨발걷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90	0	0	0	0	90	18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6조)	6.6	6.6	6.6	6.6	6.6	33	6.6
맨발걷기 관련 사업 수행(안 제9조14조15조)	298	304	310	317	323	1,552	310
맨발걷기의 날 지정·운영(안 제19조)	94	96	98	100	102	491	98
합계	489	407	415	423	432	2,166	4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